

미국 시사잡지의 연방대법원 관련보도 분석

보울즈, 브롬리

Archibald Cox 연방대법원과 헌법의 역사에 관한 자신의 저서에서, 법원이 손해배상금이나 사법처리 등의 강제력 없이는 자신들의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고 지적 하고, 사법적인 판결에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63 년, 학교에서의 인종차별 폐지와 기도금지 등을 시행하기 위한 군대 동원문제와 관련,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Cox 는 Robert Kennedy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어야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물리적인 힘이 아예 없거나, 혹은 유일하게 가용한 강제력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할만한 답은 구할 수 없다. 공무원과 일반개인뿐만 아니라 전체국민이, 자유가 국민의 자발적 순응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체제가 유지되고, 인간의 자유가 보호되며, 우리 사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시련이 닥쳐올 때, 그러한 인식은 국민이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봉기하여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만큼 강한 것이다. 헌법체제는 국민들의 총화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Cox 는 자신이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특별검사로 활동할 때, 닉슨대통령이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그 논쟁에 대해 법원이 아닌 국민앞에서 재판받았다는 것이·아닌가 생각했으며, 토요일 밤의 대학살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후 공중의 분노가 백악관을 뒤덮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Cox 는, 합헌여부의 결정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될 것이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시민인 우리들 자신의 집합적인 기대감이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회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지배적이고 광범위한 국민들의 의지와 상반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헌법을 해석하는 마지막 전결권자로서의 연방대법원과 연방대법원 판결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여론과 더불어, 시민들이 연방대법원의 활동에 관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시민들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연방대법원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얻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가 얼마나 철저한가?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의 활동에 관한 신문, 잡지의 보도는 부적절하며 수동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언론의 보도에 의존하는 공중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피상적이고 때로는 왜곡된 기사만을 접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 활동의 대부분에 대해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른 판사들보다도 더 오래 연방대법원에 근무한 William. O. Douglas 대법관은 연방대법원에 관한 전형적인 기사들이 평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대법원에 관한 보도가 정부기관에 관한 보도보다 아주 비우호적이었다고 한 Max Freedman 기자의 평가보다도 더 혹독한 것이다.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50년 동안의 연방대법원의 수정헌법 제 1 조 관련 판결에 대한 신문의 사설을 내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자들은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논설가들은 소송에 관한 사실들만을 보도했고 문제된 것이 무엇인가, 판결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사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서는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신문의 연방대법원 관련 보도를 연구한 Ericson은 3개 신문 중 2개 신문이 주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통신사의 요약기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냈다. 또한 통상적인 판결은 기사화되지 않았거나 짧은 토막기사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독자들이 1974년 10월 동안에 내려진 연방대법원 판결 중 4분의 3 이상에 대해 왜 그 소송이 제기되었는가, 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시사주간지들이 대표적인 일간신문들에 비해 연방대법원의 소송사건을 좀더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시사주간지의 보도량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Michael Solimine이 1975년부터 1977년까지 3년간의 시사잡지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Newsweek, Time, 그리고 U.S. News & World Report 등 3개 유력지는 전체 연방대법원 판결의 15%인 평균 22.4건의 판결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8~1980년 간 시사잡지의 연방대법원 판결보도를 분석한 또다른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시사잡지의 보도를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한 Solimine과 Tarpley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 1 조 관련 판결이 상당히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수정헌법 제 1 조 관련 판결보도건수와 연방대법원의 판결건수를 비교하지는 않았다. 1975년과 1977년 사이에 보도된 판결의 42%는 수정헌법 제 1 조 또는 동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에 관한 소송이었다. Solimine은 1977년 중에 행해진 병원 판결의 40%가 수정헌법 제 1 조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Tarpley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8~1980년 동안에 언론계에 영향을 미친 기사는, 수정헌법 제 1 조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송기사들로 47%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에 관한 이와같은 불충분하고 불균형적인 보도의 문제는 박식한 시민집단에 의존하는 정부에 대해 증대한 함의를 암시한다.

Grey가 명확하게 표현한 바와 같이, 그러한 결과는 우리의 법체계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말하자면, 공중이 만약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어떤 특정한 법률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논평가의 표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첫째, 정의를 확립하고 이를 증진시키며, 둘째, 대법원이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2개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대법원의 권위는 부분적으로는 대법원의 활동에 대한 공중의 이해와 수용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기간행물들이 대법원의 활동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연구의 목적은 전국적 규모로 발행되는 3대 주요 시사주간지인 Newsweek, Time, 그리고 U.S. News & World Report 등이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독자들에게 연방대법원의 활동에 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전달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전체적으로 연구대상 시사주간지가 연방대법원 관련보도를 얼마만큼 했는가? 보도량은 시간에 따라 변화했는가? 월별로는 어느 정표보도 되었는가?
- 2) 연방대법원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막대그래프나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가?
- 3) 대법원 관련 보도기사의 주제는 무엇이었으며 각 연도별 대법원 소송사건의 보도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4) 판결 관련 보도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들이 기사화 되었는가? 각각의 시사주간지에서 기사화된 법률적인 문제들은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문제들과 어느 정도 대등한가? 특히, 수정헌법 제 1 조 관련 문제 및 언론사와 관련된 여타 소송사건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건수와 비교해서 다른 법률적 문제들보다 얼마나 자주 보도되었는가?
- 5) 질적 분석 결과, 언론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얼마나 철저히 보도했는가?

이 연구는 Solimine 과 Tarpley 의 연구를 확대하여 다시 연구한 것이다. Solimine 과 Tarpley 는 그들의 연구를 1975~1977 년, 1978~1980 년 등, 총 33 개월 동안 매년 10 월초부터 이듬해 6 월 말까지의 연방대법원 관련기사로 제한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81 년 9 월 1 일부터 1989 년 7 월 31 일까지 총 95 개월 동안 3 대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를 조사했다. 연구대상기간은 Solimine 과 Tarpley 가 연구한 대상 기간의 3 배에 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건 재임 8 년 동안 연도별로 게재된 기사의 수와 판결문 건수를 비교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재임중 특정연도에 판사의 임명등과 같은 연방대법원 관련사건이 집중적으로 보도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연구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하였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도했는가에 따라 각각의 기사를 다음의 7 개 범주의 하나로 코딩했다. 1) 판결된 사건, 2) 계속중인 소송, 3) 사건이송명령의 인정 혹은 기각, 4) 연방대법원 판사 개인에 관한 것, 5) 연방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자 혹은 임명 가능성 있는 판사에 관한 것, 6) 일반적으로 연방대법원과 관련된 것, 7) 기타. 특별히 판결 관련보도에서 언급되었거나 논의된 각 판례는 법률적인 문제들의 범주에 넣었다. 법률적 문제에 관한 카테고리에는 수정헌법 제 1 조 관련, 시민의 권리 및 동등보호, 형법, 낙태, 경제, 기타 등으로 분류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의 판결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된 각각의 기사를 다음의 9 개 기술적 변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코딩했다. 1) 소송사건명, 혹은 특수한 소송사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당사자들의 이름, 2) 소송사건의 소송 전개 과정 혹은 소송사건의 배경설명, 3)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의 분포에 관한 보도, 4) 소송사건에서의 다수의견에 관한 언급이나 논의, 5) 소수의견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 6) 그 소송에서 적용된 법률, 규칙 또는 판례, 7) 그 판결의 개연적인 혹은 기대되는 영향에 관한 언급이나 논의, 8)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 9) 소송관련당사자, 소송과 관련되지 않은 법률전문가, 그 소송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소송결과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 판사 개인 등등의 반응. 한 기사에서 다수의 소송사건을 보도한 경우에는, 그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사건의 질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규명했다. 각각의 기사는 하나 또는 다수의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게재되었는가, 일러스트레이션 형태는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코딩했다.

연구대상 기간인 8 년 동안, 3 개 잡지에서 대법원과 관련하여 보도한 기사의 모든 목록은 The Readers' Guide 에 종합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두사람이 37 개 항목의 코딩지를 사용하여 기사를 읽고 분석했다. 코딩을 하는 사람들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 3 자가 총기사의 32%에 달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16 개의 변인을 코딩했다. 잡지명, 날짜, 기간 등,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변수들은 코딩작업자 상호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적인 문제들과 기사의 초점 등과 같은 변수들은 질적인 특성과

마찬가지로 제 3 의 코팅작업자에 의해 코딩되었다. Holsti 의 공식에 따르면, 코딩 작업자간의 신뢰도는 98.1%였다.

연구대상인 3 개의 시사주간지가 8 년 동안 연방대법원과 관련하여 보도한 기사를 보면 Newsweek 가 160 건, Time 과 U.S. News & World Report 지는 각각 150 건으로 총 460 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1984 년의 최저 15.7 건에서 1987 년의 최고 28 건에 이르기까지 3 개 잡지의 연방대법원 관련기사의 평균보도건수는 각 연도별로 그렇게 크게 증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개 시사잡지는 매월 평균 4.8 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연구대상 기간인 95 개월 동안 각 시사잡지 당 매월 평균 1.6 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7 월 여름휴가 기간에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많은 판결을 내렸다. 6 월과 7 월에는 연방대법원관련기사가 총 기사 35.2%에 달하는 등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별로 놀라운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 관련 보도기사의 85.2%가 그래픽과 함께 게재되었다. 3 개의 시사주간지 각각은 연방대법원 관련기사의 80% 이상을 사진·그림·도안·도표 등과 또는 이들을 상호 결합하여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정도로 유사했다. Tarpley 는 그의 연구에서 연구대상기사의 74%가 그래픽요소와 함께 게재되었음을 밝혀 냈다. 본 연구대상기사의 66.5%가 한장 또는 그 이상의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고, 7%는 한장의 그림을 함께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대상 기사의 11.7%는 한장 또는 둘 이상의 그림이 결합된 형태로 게재되었다. 전체기사의 13.7%에 해당하는 63 개의 기사는 막대그래프를 이용했는데, U.S News & World Report 지는 다른 두 잡지에 비해 막대그래프를 사용하는 빈도가 두배나 많았다.

연구대상기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의 기사가 판결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계속중인 소송과 사건이송명령 청구소송 등은 전체기사의 11.5%였다. 연방대법원의 민사와 법관 임명에 관한 기사는 총 460 개의 기사 중 21.3%였으며 이는 Tarpley 의 연구에서 비하면 6%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기사의 5%는 연방대법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련된 보도였고 14%는 기타에 속하는 것이었다.

8 년간의 기사분포를 보면, Lewis Powell 판사의 사임과 레이건 대통령의 후임자 임명에 대한 인준청문이 있었던 1987 년에는 잡지들이 법원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3 대 잡지는 1987 년에 Powell 판사의 사임과 Robert Bork, Douglas Ginsberg 와 Anthony Kennedy 등 후임 판사 지명과 관련, 45 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상원 인준청문회 관련기사는 1987 년에 보도된 연방대법원 관련기사의 53.6%를 차지했다. Powell 판사의 교체와 1981 년 최초의 여성판사인 Sandra Day O'conner 의 임명을 포함한 다른 세 사람에 관한 기사가 연구대상이 된 460 개의 기사 중 12.8%를 차지 했다.

비록 1987년에 많은 기사가 보도되었지만, 판결과 관련한 보도는 가장 적은 해였다. 3개 잡지는 1987년에 판결소송과 관련하여 32건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각 매체별로 보면 평균 10.7건에 불과했다. 1987년에 연방대법원은 142건의 판결문을 남겼는데 각 잡지는 그 판결문건수의 7.5%만을 보도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83년에 3개 잡지는 연방대법원 판결 163건의 15.3%에 해당되는 25건의 소송사건과 관련, 평균 17.3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460개 기사는 최근의 판결, 계속중인 사건, 사건 이송명령 허용여부 등을 포함한 총 433개 소송사건을 언급하거나 논의했다. 이들 433개 소송 중 367개는 최근에 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한 소송이었다. 각각의 소송은 그것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따라 코딩되었다. 그 결과 형사관련문제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민의 권리에 관한 것이 많았다. 3개 잡지가 보도한 소송판결의 5분의 1은 수정헌법 제 1조와 관련한 보도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뉴스매체들이 다른 법률적인 문제들보다 수정헌법 제 1조와 관련된 주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도량과 판결량을 시민의 권리 및 동등보호조항, 형법, 그리고 수정헌법 제 1조의 항목별로 각각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이건의 집권기간 동안 연방대법원은 총 1,239건의 소송을 판결했다. 이 연구의 대상매체인 3개 시사잡지 각각은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소송의 9.9%인 평균 122.3건의 소송사건만을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송사건의 비율면에서 볼 때 시사잡지의 보도는 각각의 법률적인 문제들을 고르게 보도했다.

Newsweek, Time, 그리고 U.S. News & World Report지의 독자들은 비록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대법원 판결의 10%에도 못 미치는 소송에 관해 알게 됐을지라도, 독자들은 어떤 소송에 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받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460개 기사가 367건의 소송판결을 보도했는데 어떤 기사는 두개 이상의 소송에 관해 언급하거나 논의했다. 두 개 이상의 소송을 다룬 단독기사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소송사건이 질적인 특성을 코딩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래서 총 221건이 코딩되었다.

연구대상잡지들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질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판결이 만 사건과 관련한 기사의 반수 이상이 이 연구에서 기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8가지의 범주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반은 법원판결에 따른 다양한 반응을 보도했다. 3개의 잡지들은 그들이 보도한 소송사건의 90% 이상의 기사에서 연방대법원의 찬반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기사가 얼마나 철저 했는가를 나타내는 4가지 특성을 포함한 기사도 80% 이상이었다. 4가지 특성은 특정 한 사건명, 혹은 독자가 그 소송을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보충적 사실 혹은 소송의 과정, 다수의견의 보도여부, 그리고 기대되는 판결의 효과 등이다.

질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코딩된 사례의 4분의 3 이상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응을 기사화했다. 게다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보도한 기자들은 종종 다양한 정보원을 취재, 그들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주로 소송당사자, 법률전문가, 그리고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게 된 기타의 사람들이었다.

계속중인 소송에 대한 기사의 질을 분석한 결과, 잡지들은 그 소송에 대해 철저히 보도했으며, 다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취재보도했다.

1975~1980 년 기간 동안에 시사잡지의 연방대법원 판결관련보도가 전체판결건수의 15%였다는 기존연구결과와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9.9%라는 수치를 비교해 보면, 레이건 재임기간 동안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보도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법의 우수성에 관해 바람직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공중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전국적인 시사주간지에 의존하는 독자들은 매우 제한된 수의 소송사건에 관해서만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반 흥미위주 정기간행물은 어느 단일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보도기사를 제공할 수 없으며, 그러한 매체의 편집자나 발행인들은 그런 보도기사를 만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법원의 인사 이동이 있는 해에 소송사건기사가 줄었다는 사실은 시사잡지의 편집자들이 법률적 사건에 대한 기사의 지면을 줄이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약 지면이 인준논쟁과 같은 돌발적 인 사건으로 채워진다면, 개별적인 소송판결에 대한 기사를 게재할 지면이 줄어든다.

편집자는 분명히 이와 같은 이례적인 법원관련 문제를 백화점이나 상점들에 할당된 지면을 줄이기보다는 판결에 관련된 보도기사의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한다.

소송사건 관련 보도의 감소와 대법원 인사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유명인을 특종거리로 생각하는 작금의 언론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레이건행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대법원의 판결경향의 대전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 판사의 임명과 임명된 판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상원 법사위원회의 위원과 같이 잡지 편집자들은 연방대법원 판사 후보자들의 개성을 면밀히 관찰한다.

O'conner 가 연방대법원 판사에 지명되자, 언론은 후보자의 법복의 길이와 요리습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Ginsberg 의 경우에는 흡연습관이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었다.

현대 잡지의 지면구성과 디자인경향이 소송사건에 관련된 보도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본 연구대상 기사의 11% 이상이 1975~1977 년 의 연방대법원 관련 기사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보다 더 많이 그래픽요소들을 이용하여 보도되었다. 독자들을 끌기 위한 이런 유혹은 그렇지 않았다면 소송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할애되었을 지면을 잠식 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TV 세대」는 연방대법원 관련 보도의 어느 것도 읽지 않을 것이다. 비록 3 대 주요 시사잡지의 독자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잡지가 강조하는 몇몇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다소 완전한 정보를 받고 있다. 보도의 질은 보도의 양에 비해 훨씬 우월했다. 그리고 NewYork Times 에 대한 Ericson 의 연구결과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대부분이 연방대법원 판결에 관해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의 반응을 인용 보도했다는 것은 기자들이 뉴스기사의 잠재적 독자의 흥미에 부합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은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각양각색의 반응을 활발히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이것은 기자들로 하여금 법률에 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정보원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읽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거나 충분히 분석해 보지않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논평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만든다.

이 전의 신문과 잡지가 보도한 연방대법원관련 보도기사의 내용분석과 같이, 이 연구에서도 수정헌법 제 1 조와 매체가 관련된 소송사건의 보도량은 다른 법률적 문제를 다른 소송사건의 보도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arpley 는 이같은 견해를 거부했다. 그의 결론에 의하면, 언론과 관련된 모든 연방대법원 판결에 관한 기사들(47%)은 언론과 관련이 없는 소송 사건에 관한 기사 (53%)에 비해 전체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Tarpley 는 시사잡지가 언론과 관련이 없는 판결보다 언론과 관련된 판결 기사를 많이 보도한다는 자신의 가설을 부정하면서, 언론과 관련된 판결과 언론과 관련되지 않은 판결간의 상대적인 비율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다른 유형의 연방대법원 소송기사보다도 수정헌법 제 1 조에 관한 기사를 더 많이 게재하는 시사잡지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은 이기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또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수정헌법 제 1 조와 관련한 사건에 불균형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현상은 언론이 관련된 소송에 대한 언론의 독점적 이익과 뉴스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언론과 종교 그리고 특정 단체의 권리는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벌금형, 피고인의 권리, 그리고 다른 형사적인 문제들은 시민의 권리와 동등 보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의 의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는지 모른다.

사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권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